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밑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및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 공무원단 가급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4급 4명, 5급 6명, 6급 7명, 7급 6명)을 증원하며, 산업재해 예방 기획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1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밀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6명(6급 46명, 7급 6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직업건강증진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7명(6급 17명)의 직급을 상향(5급 17명) 조정하며, 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산업안전감독과의 명칭을 광역중대재해관리과로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4개소에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을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보한다”를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
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
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을 보좌한다.

④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재보상정책과·산업
안전기준과·산업보건기준과·직업건강증진팀·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건설산재예방정책과·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및 화
학사고예방과를 둔다.

제8조제6항(중전의 제4항) 중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공업·보건·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직
업건강증진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산재예방요율제”를 “휴게시설 등 위생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증진정책 수립·시행
2. 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한 보건분야 기술지도
6. 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 고열, 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9. 직무스트레스,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⑫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지도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동향 파악
 10. 그 밖에 안전·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⑬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홍보
 5.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 ⑭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시행
 2.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발주자 제도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⑮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 총괄 관리(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석·적용(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수사외 총괄·지원(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5.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10.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과장”을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관리자 제도”를 “산재예방요율제”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중전의 제13호)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산업안전지도사·위생지도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13.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8조제10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보건과장”을 “산업보건기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7호) 중 “물리적·생물학적”을 “물리적(고열·한랭 제외)·생물학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을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12호) 중 “화학물질”을 “유해·위험 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중전의 제8항)제19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사고예방과장”을 “산업안전기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정안전관리(PSM)”를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학업종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를 “유해작업 도급 금지 및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해작업 도급금지”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를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11호) 중 “위험성평가”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시행(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8. 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9.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1.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12. 그 밖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8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시행
2.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화재·폭발·누출사고 대응 및 원인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4.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5.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6.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운영 및 국가간 협력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고용센터 및 근로개선지도센터를)을 “(고용센터, 근로개선지도센터 및 산재예방지도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을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소속 지청” 중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제14조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9호) 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을 “공정안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반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관한 사항
 8. 재해발생 총괄 상황파악, 분석 및 관리
 9. 디지털증거 복원·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1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14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을 “산재예방지도과(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제1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10.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석면 조사 및 해체 제거작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설업을 제외한다)·운영

1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제13항제10호에 관한 사항

2.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⑯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용센터를)을 “(고용센터 및 팀을)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을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으로, “행정

주사로 보한다”를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협력과장”을 “지역협력과(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협력과장:”을 “지역협력과(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과장”을 “근로개선지도과(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재예방지도과(팀)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

가. 제14조제13항제10호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다.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라.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마.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⑦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제14조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은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1호, 제3호의 사항 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을 제외한 사항

2. 제14조제13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

3.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⑨ 산재예방지도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의정부·경기·성남·울산·포항·전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10호의 사항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

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⑩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제25조제1항 중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산업안전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과장”을 “산업안전기준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화학사고예방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2호 중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을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570”을 “605”로 하고, 일반직 계 “564”를 “59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9”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0”을 “34”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10”으로, 행정사무관 “110”을 “10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31”로, 행정주사 “62”를 “5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7”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6”을 “7”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12”로, 행정주사보 “62”를 “6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5”로, 공업

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을 “13”으로, 운전서기 2 다음에 “시설연구관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589”를 “624”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61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9”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을 “35”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10”으로, 행정사무관 “130”을 “12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을 “32”로, 행정주사 “56”을 “53”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7”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6”을 “7”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12”로, 행정주사보 “55”를 “53”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5”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을 “13”으로, 운전서기 2 다음에 “시설연구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6,587”을 “6,6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87”을 “6,69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99”를 “197”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18”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중전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다음에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1,032”를 “987”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8”을 “243”으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23”을 “52”

로, 행정주사보 “1,189”를 “1,12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67”을 “33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9”를 “89”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6,577”을 “6,6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77”을 “6,6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21”을 “11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18”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중전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다음에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872”를 “827”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6”을 “241”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23”을 “52”로, 행정주사보 “1,088”을 “1,02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70”을 “333”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9”를 “89”로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업건강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보건기준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4]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서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부산사하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동부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광주광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제주산재예방지도팀 , 건설산재지도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공주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

	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근로감독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	---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성동광진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강북성북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김포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구리고용센터, 남양주고용센터, 동두천고용센터, 양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파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하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

	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광명고용센터, 의왕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3과, 산재예방지도과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오산고용센터, 안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속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양산고용센터, 밀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거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달성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경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문경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부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해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옥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아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개선지도2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제천고용센터, 음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산재예방지도팀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1	89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0	88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3	25	10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4	11	7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3	2	11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5	93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4	92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 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4	27	10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3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4	4	20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1	2	9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 기반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보건본부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 독기획과	4명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 원과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 방정책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 해감독과	8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산업안전감독	1명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 지원2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 지원2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 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 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 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 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 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 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0)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1)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2)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3)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4)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5) 전주지청 건설산재지도과	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9명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8급 30명, 9급 7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2)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3)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급 14명, 8급 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06명 (6급 46명, 7급 6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한다</u> .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u>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으로 한다</u> .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
③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산재예방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과 · 산업보건과 · 화학사고예방과를 둔다.	③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신 설>	④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

<신 설>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 · 연구
3. 사업장 안전 · 보건 감독계획의 수립 · 지도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 · 개정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보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업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및 화학사고예방과를 둔다.

⑥ -----
---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 공업 · 보건 · 시설사무관---.

⑪ 직업건강증진팀장-----
-----.

1. 건강증진정책 수립 · 시행
2. 건강증진 기준에 관한 사항
3.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한 보건분야 기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술지도	1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삭 제>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6. 사업장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8.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7.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 제>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8. 고열, 한랭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20.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 제>
9.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직무스트레스, 고액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10.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⑫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11.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1.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 홍보	12.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의 총괄·조정 및 지원
13.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삭 제>		3.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14.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4.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삭 제>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 관련 총괄 대응 및 감독 계획 수립·지도
16.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삭 제>		

<신 설>

6.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동향 파악
 10. 그 밖에 안전·보건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⑬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총괄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 홍보
 5.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

<신 설>

- 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11.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 ⑭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시행
 2.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3. 건설업 중대재해 관련 대응 및 감독계획 수립·지도
 4. 건설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도에 관한 사항

<신 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발주자 제도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1.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12.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⑮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 총괄 관리(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석·적용(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수사의 총괄·지원(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5.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10.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⑥ (생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시행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4.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4.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8.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중대재해 보고·분석 및 대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

책수립	도·감독
10.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재예방요율제-----
1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12.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
<신설>	13.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4. 산업안전지도사·위생지도사---
<신설>	15.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삭제>
<신설>	16.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 산업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산업보건기준과장-----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물리적·생물학적 인자 등으	12. 물리적(고열·한랭 제외)·

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생물학적 ---	항을 분장한다.	-----.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1.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시행
9. (생 략)	13. (현행 제9호와 같음)	업사고 예방정책 수립·시행	(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
10.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	10.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카드		한다)
리수첩 제도에 관한 사항	-----	2.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1.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	<삭 제>	지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건설업에 관한 업무는 제외
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		사항	한다)
방에 관한 사항		3.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1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7. 유해·위험 물질-----	사항	--
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	4. 화학업종 도급사업의 안전보	4. 유해작업 도급 금지 및 승인
13. 보건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	<삭 제>	건조치에 관한 사항	-----
항		5.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
14. 사업장에 대한 보건분야 기	<삭 제>	사항	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
술지도		6.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도-----
15. (생 략)	11. (현행 제15호와 같음)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
16. 산업안전지도사·위생지도	<삭 제>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사 제도에 관한 사항		7.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	에 관한 사항(건설업에 관한
17.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제	<삭 제>	에 관한 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도 운영		8.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1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삭 제>	국제기준(GHS) 관련 제도 개	방호조치 --
사항		선·운영	8. 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
<신 설>	14. 그 밖에 산업보건기준에 관	9.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	술지도 및 재정지원(건설업에
	한 사항	시에 관한 사항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삭 제>		9.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
증진에 관한 사항			관 제도에 관한 사항(건설업
⑨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사	⑨ 산업안전기준과장-----		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4. <u>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u> 5. <u>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u> 6. <u>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u> 7. <u>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u> 8. <u>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u> <신 설> 9.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정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u>	<u>역사업에 관한 사항</u> <삭 제> 5.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정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u>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반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관한 사항 8. <u>재해발생 총괄 상황파악, 분석 및 관리</u> 9. <u>디지털증거 복원·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u> 13. <u>공정안전</u>----- --	<신 설> 9의2.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정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u> 10. <u>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11.·12. <u>삭 제</u> <신 설> ⑭ <u>광역산업안전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역산업안전감독과가 없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u>	14. <u>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u> <삭 제> 10. <u>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u> 15. <u>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정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⑭ <u>산재예방지도과(팀)장-----</u> -----<u>.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u>
---	---	---	---

<u>분장한다.</u> 1.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u> 2.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u> 3.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u> 4.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등록 및 기관 점검에 관한 사항</u> 5. <u>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u>	1. <u>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u> 2. <u>(현행과 같음)</u> 3. <u>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u> 4. <u>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u> 5. <u>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u>		<u>감독 계획 수립·시행</u> 6. <u>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6. <u>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u> 7. <u>「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3조에 해당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u> 8. <u>「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u> 9. <u>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u> 10. <u>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u> 11. <u>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u> 12. <u>석면 조사 및 해체 제거작업</u>
---	--	--	---	---

	<u>의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u>
<u><신 설></u>	<u>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건설업을 제외한다)·운영</u>
<u><신 설></u>	<u>1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u>
	<u>1. 제13항제10호에 관한 사항</u>
	<u>2.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u>
	<u>3. 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u>

	<u>외한 사항</u>
	<u>4. 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u>
	<u>5. 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⑯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u>
	<u>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u>
	<u>3. 건설업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u>
	<u>4.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u>
	<u>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건설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u>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9.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및 관리 11.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2. 그 밖에 건설업의 산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고용센터 및 팀을 ----- -----. ----- ----- ----- -----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 -----.
		②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② ----- ----- ----- ----- -----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로 보한다. -- ----- -----.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	③ ----- 지역협력과(팀)장 ----- -----. ----- ----- ----- -----

⑧ 삭 제
<신 설>

지청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1호, 제3호의 사항 중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을 제외한 사항
2. 제14조제13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
3.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⑨ 산재예방지도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의정부·경기·성남·울산·포항·전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

<신 설>

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4조제13항제10호의 사항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⑩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 사

	항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u>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u>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①----- ----- ----- ----- <u>산업안전보건정책관</u> ----- -----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애인고용과장, 노동시장조사과장, <u>산업안전과장</u> , 고양지청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 ----- <u>산업안전기준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화학사고예방과장</u> ----- ----- ----- ----- -----.
제27조(근로감독정책단) ① ~ ④ (생략)	제27조(근로감독정책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u> 의 구축·운영	12. <u>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u>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70</u>	<u>605</u>	+35
·	·	·	
·	·	·	
일반직 계	<u>564</u>	<u>599</u>	+35
고위공무원단	<u>17</u>	<u>19</u>	+2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0</u>	<u>34</u>	+4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8</u>	<u>10</u>	+2
행정사무관	<u>110</u>	<u>109</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u>21</u>	<u>31</u>	+10

또는 전산사무관	·	·	
·	·	·	
행정주사	<u>62</u>	<u>59</u>	-3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1</u>	<u>7</u>	+6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u>6</u>	<u>7</u>	+1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6</u>	<u>12</u>	+6
·	·	·	
행정주사보	<u>62</u>	<u>60</u>	-2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5</u>	+4
·	·	·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u>8</u>	<u>13</u>	+5

또는 시설주사보			
운전서기	<u>2</u>	<u><현행></u>	
시설연구관	<u><신설></u>	<u>1</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89</u>	<u>624</u>	+35
.	.	.	
.	.	.	
일반직 계	<u>583</u>	<u>618</u>	+35
고위공무원단	<u>17</u>	<u>19</u>	+2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1</u>	<u>35</u>	+4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8</u>	<u>10</u>	+2
행정사무관	<u>130</u>	<u>129</u>	-1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2</u>	<u>32</u>	+10

·	·	·	
·	·	·	
행정주사	<u>56</u>	<u>53</u>	-3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1</u>	<u>7</u>	+6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u>6</u>	<u>7</u>	+1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6</u>	<u>12</u>	+6
·	·	·	
행정주사보	<u>55</u>	<u>53</u>	-2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u>	<u>5</u>	+4
·	·	·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8</u>	<u>13</u>	+5

운전서기	<u>2</u>	<u><현행></u>	
시설연구관	<u><신설></u>	<u>1</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87</u>	<u>6,693</u>	+106
일반직 계	<u>6,587</u>	<u>6,693</u>	+106
·	·	·	
·	·	·	
행정사무관	<u>199</u>	<u>197</u>	-2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u>	<u>18</u>	+13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u><신설></u>	<u>6</u>	+6
행정주사	<u>1,032</u>	<u>987</u>	-45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198</u>	<u>243</u>	+45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23</u>	<u>52</u>	+29
·	·	·	
행정주사보	<u>1,189</u>	<u>1,126</u>	-63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67</u>	<u>330</u>	+63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u>29</u>	<u>89</u>	+60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77</u>	<u>6,683</u>	+106
일반직 계	<u>6,577</u>	<u>6,683</u>	+106
·	·	·	
·	·	·	
행정사무관	<u>121</u>	<u>119</u>	-2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u>	<u>18</u>	+13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u><신설></u>	<u>6</u>	+6
행정주사	<u>872</u>	<u>827</u>	-45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196</u>	<u>241</u>	+45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23</u>	<u>52</u>	+29
·	·	·	
행정주사보	<u>1,088</u>	<u>1,025</u>	-63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270</u>	<u>333</u>	+63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u>29</u>	<u>89</u>	+60
·	·	·	
·	·	·	